

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[2020. 11. 20] 조례 제945호

일부개정 2022. 2. 4 조례 제1026호
(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2. 4>

제2조(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 2. 4>

② 군수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, 이장 및 증평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한다. <개정 2022. 2. 4>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심의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심의회의 운영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(간사)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증평군 의정비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2. 4 조례 제1026호, 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
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